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4일, 소병훈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8. 20.)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9. 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 9.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병훈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

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암등록통계에 현행의 암 발생률·생존율 외에 암검진 수검률·사망률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하도록 명시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암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암 검진 수검률·발생률·생존율·사망률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통계 작성작업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통계 산출에 관계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수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통계 작성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암등록통계사업의 통계 산출에 관계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수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통계 작성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전단 중 “산출”을 “산출(관계 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수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본다.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부칙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을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를 산출(관계 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수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u>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u> (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u>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u>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 ----- ----- ----- <u>암검진 수집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u> 를 산출(관계 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수록을 포함한다)----- ----- ----- ----. ----- ----- ----- <u>준용한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